

	법률동향	2026. 5. 28.(목) 법무과장 윤재순(☎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6월 주요 시행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10만 명이 넘지 아니하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4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경진흥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3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 주거기본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융합 촉진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5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사무를 강화하며,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을 부여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수·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호).

-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 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제10조의5제8항 단서 및 제10조의6제15항 단서 신설).
-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3 신설).
-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8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격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함(제35조제2항제5호).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9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의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주차장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6. 5.]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해양수산물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
-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및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還付)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
-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
-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
-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
-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14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 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적용이 어렵고,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이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의 장소로 확대하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